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06. 8. 3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함(안 제2조)

-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나.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정함(안 제3조)

- 지급기준 : 1년차 1/100, 2년차 3/100, 3년차 5/100
- 지급한도 : 징수1건당 30만원, 개인별 월 100만원

다.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, 부당지급 받은 경우 환수 규정 신설(안 제4조·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6. 6. 12 ~ 7. 3(21일간) ▷ 제출된 의견없음

마. 기 타 : 조례표준안 시달(시 세정담당관실- 6742, 2006.5.8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지급대상자)**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징수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 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2.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(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)을 찾아내어 부과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 처벌법」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

제3조 (지급 기준 및 한도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4.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5. 도로·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6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: 1건당 30만원(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)으로 하되,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제1항제6호 : 100만원

**제4조 (신청 및 심사)**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·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 (지급방법 등)**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대장비치)**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·숨은세입원발굴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

구 분	건 수	징 수 내 역			포 상 금
		세 액	가산금	계	
과 년 도 체납액 징수					
탈루·숨은 세입원 발굴	1년경과 탈루·숨은 세입원				
	과표초과				
	무단점유				
기 타					
계					

주)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되, 동조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기타 란에 기재하고 세입 징수액을 세액 란에 기재한다.

- 붙임 : 1.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 
 2. 탈루·숨은 세입원 발굴 내역  
 3.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

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[별지 제1호서식 부표 1]

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

징수자			건수	징수내역			포상금	비고
소속	직	성명		세액	가산금	계		

2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[별지 제1호서식 부표 2]

탈루 · 숨은 세입원 발굴 내역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	과목	구분	발굴 세액	징수 년월일	건수	포상금	비고
	소속	직급 (주소)	성명							

2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



